

**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도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15. 11. 2.

발 의 자 : 이도형·박병만·김진규

정창일·안영수·손철운·

조계자 의원

(찬성자 2 인)

☐ 제안이유

- 「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관련한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
- 점점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청년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함(안 제2조)
-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(안 제3조)
- 일자리창출계획에 청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함(안 제4조)
-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의2)

- 시장은 인천시 출자·출연기관의 장에게 청년 구직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(안 제6조의2)

☐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"청년"이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시장의 책무)”를 “(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공사·공단과 「인천광역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청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
6.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실태조사)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의2(청년고용 확대) 시장은 시 출자·출연기관의 장에게 청년 구직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"청년"이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"청년"이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공사·공단과 「인천광역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. 1. ~ 4. (생략)	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<u>5. 청년 일자리 발굴 및 보급</u>
<u><신 설></u>	<u>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6.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</u>
<u><신 설></u>	<u>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실태조사) 시장은 청년</u>
<u><신 설></u>	<u>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</u>
<u><신 설></u>	<u>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</u>
<u><신 설></u>	<u>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청년고용 확대) 시장은</u>
<u><신 설></u>	<u>시 출자·출연기관의 장에게 청</u>
<u><신 설></u>	<u>년 구직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</u>
<u><신 설></u>	<u>권장할 수 있다.</u>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법령	☐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☐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☐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(청년의 나이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련 법령 발췌 사항

☐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년"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

제2조(청년의 나이)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

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"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비용
 - 매년 1억원 이하로 실태조사 가능
(연간 실 소요비용은 1천만원 내외로 예상)
 -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절감 예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이 경우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신 왕 식